##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30 발의연월일: 2025. 1. 20.

발 의 자: 김남희 · 김 유 · 장종태

임미애 · 송옥주 · 김우영

윤후덕 · 용혜인 · 이연희

남인순 · 김문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3. 7. 11.)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이름・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행위에 추가되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 •확산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이에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의 피해자에게 피해 정보에 대한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 용은 스토킹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에 대한 피해자 지원) ① 국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바목 및 사목의 스토킹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에 배포되거나 게시된 정보 등(이하"스토킹행위 피해 정보"라 한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스토킹행위 피해 정보의 삭제 지원에 관하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촬영물등"은 "스토킹행위 피해 정보"로, "성폭력행위 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는 "스토킹행위자"로 본 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7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에 대한 피해자 지
	원) ① 국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바목 및 사목의 스토킹행
	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정보통
	신망에 배포되거나 게시된 정
	보 등(이하 "스토킹행위 피해
	정보"라 한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스토킹행위 피해 정보의 삭
	제 지원에 관하여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2항부터 제6
	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촬영물등"은 "스토킹행위 피
	해 정보"로, "성폭력행위자 또
	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자"는 "스토킹행위자"로
	<u>본다.</u>